

수 신 : 정회원사

참 조 :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기획 소송 등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630호, 일부개정)

○ 개정·공포일 : ' 26. 5.12(화) ※ 공포 2년이후 시행

○ 주요내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37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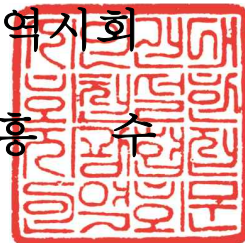
⇒ 현행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활용되었던 「하자판정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하자 관련 법원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붙 임 전자관보(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incheon.kosca.or.kr) - 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 장 조 홍 수



담당자 사원 최현탁 과장 김주현 부장 계박사 실장 문승주
시행 전건협 인천 제397호(2026. 5.29)

우 21574/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구월동, 전문건설회관) / <http://incheon.kosca.or.kr>
전화 032-428-7331 / 전송 032-428-7334 / 전자우편 qrt9373@kosca.or.kr